

[변경 대비표]

1. 펀드명 : 동양모아드림삼성그룹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
2. 기준일 : 2018.5.2

3. 효력발생일 : 2018.5.31

4. 정정사유

- ① 책임운용역 변경(심재덕→박성신), 부책임운용역 추가(유동욱)
- ② 신고서 내 판매보수 중복기재 삭제
- ③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
5. 투자설명서

구분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요약정보			
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			
보수	업데이트	-	-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		
(1) 투자전략	책임운용역변경 및 부책임운	책임 : 심재덕	책임 : 박성신
3. 운용전문인력	용역추가	부책임 : <추가>	부책임 : 유동욱
4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	업데이트	-	-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책임운용역변경 및 부책임운용역추가, 업데이트	책임 : 심재덕 부책임 : <추가>	책임 : 박성신 부책임 : 유동욱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신고서 내 판매보수 중복기재 삭제	<정정 전>	<정정 후>
나. 종류형 구조			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변동성 업데이트	14.93%	14.88%
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		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	신고서 내 판매보수 중복기재 삭제	<정정 전>	<정정 후>
가. 매입			
(2) 종류별 가입자격			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업데이트	-	-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		
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<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>			
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	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-	-

6. 간이투자설명서

구분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			
보수	업데이트	-	-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		
(1) 투자전략 3. 운용전문인력	책임운용역변경 및 부책임운 용역추가	책임 : 심재덕 부책임 : <추가>	책임 : 박성신 부책임 : 유동욱
4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	업데이트	-	-

7. 집합투자규약 : 해당사항 없음

<정정 전>

종류별	매 입 자 격	판매보수
Class A	매입자격 제한은 없으며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	연 0.70%
Class A-G	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,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 판매수수료·보수 보다 낮은 판매수수료·보수가 적용되는 펀드 클래스	연 0.525%
Class C	매입자격 제한은 없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	연 1.0%
Class C-G	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으며,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 판매수수료·보수 보다 낮은 판매수수료·보수가 적용되는 펀드클래스	연 0.75%
Class C-P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	연 0.811%
Class C-Pe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전자매체(온라인) 전용 수익증권	연 0.4055%

Class C-F	가.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(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) 나.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	연 0.03%
Class C-W	가.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 관리계좌를 통하여 수익증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 나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 91 조의 18 제 3 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를 통하여 수익증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 다. 법 제 105 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라. 보험업법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	연 0%
Class C-P1	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	연 0.95%
Class C-P1e	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전자매체(온라인) 전용 수익증권	연 0.475%
Class S	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	연 0.35%

<정정 후>

종류별	매 입 자 격
Class A	매입자격 제한은 없으며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
Class A-G	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,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 판매수수료·보수 보다 낮은 판매수수료·보수가 적용되는 펀드클래스
Class C	매입자격 제한은 없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
Class C-G	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으며,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 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 판매수수료·보수 보다 낮은 판매수수료·보수가 적용되는 펀드클래스
Class C-P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
Class C-Pe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전자매체(온라인) 전용 수익증권
Class C-F	가.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(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

	<p>진 것을 포함)</p> <p>나.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</p>
Class C-W	<p>가.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 관리계좌를 통하여 수익증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</p> <p>나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 91 조의 18 제 3 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하여 수익증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</p> <p>다. 법 제 105 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</p> <p>라. 보험업법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</p>
Class C-P1	<p>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p>
Class C-P1e	<p>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전자매체(온라인) 전용 수익증권</p>
Class S	<p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</p>